「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인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(1인)

다. 찬 성 자: 김영태・안주찬・이명희・이상호・이지연・장미경・

허민근 의원(7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5월 7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5월 15일
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O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O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O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O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O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
 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, 제12조의2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O 본 개정조례안은

• 「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와 「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내용을 통합하여 「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전부개정함으로써,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과 근거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.

O 검토 결과,

- 구미시 가족센터는 2019년 '가족행복플라자'를 개관하였고, 2021년 10월 '가족센터'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가족센터 내에 건강가정지원, 다문화가족지원,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, 사업의 근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적기적시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가족센터의 명칭 혼동을 야기하고,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도록,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자치 법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
 - 집행기관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 필요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